

살균제

I 사례 개요

사 례 번 호: HQ H341715 (2025.06.30.)

쟁 점 사 항: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
최종 수출국: 인도

최종 원산지: 인도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살균제로 사용되는 과립형 조제 혼합물		
재료		중국	• Zoxamide
		인도	• Mancozeb • 기타 비활성 물질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중국  Zoxamide 생산 → Manufacturing ▾  인도  FUNGICIDE STEP 1 중국산 Zoxamide 수입 STEP 2 Mancozeb 생산 STEP 3 혼합 공정 수행 STEP 4 포장 → Export ▾  인도 최종 수출		
상세 공정		중국	• 유효성분인 Zoxamide 생산
		인도	• 유효성분인 Mancozeb 생산 • 두 가지 유효성분과 기타 비활성 물질을 조제 화학을 이용하여 혼합
	기타사항		• Zoxamide는 최종 혼합물의 8%를 구성하며, 감자의 초기 및 후기 역병 방제에 사용 • Mancozeb는 최종 혼합물의 67%를 구성하며, 과수, 채소, 포도, 관상용 식물 등 다양한 식품·사료 작물에 사용 • 나머지 25%는 인도산 비활성 물질 • 혼합 과정에서 화학반응은 발생하지 않음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☑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공정을 통해 각각의 유효성분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보다 그 효과성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므로, 혼합 이전과는 특성 및 용도가 상이한 상업적 제품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되며, 이에 따라 해당 혼합 공정이 이루어진 인도가 원산지임

➔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

Ⅳ 시사점

- ☑ CBP는 여러 유효성분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, 혼합을 통해 각 유효성분이 개별적으로 사용될 때 보다 그 효과성과 용도가 확대되는 경우, 특성 및 용도 면에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이 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도 함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피부용 연고
사례번호	NY N350643 (2025.07.24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이탈리아] - 활성 의약 성분인 Nystatin 제조 • [인도] - 활성 의약 성분인 Triamcinolone Acetonide 제조 - 두 가지 활성 의약 성분을 인도산 비활성 성분들과 혼합하여 피부용 연고 생산
판정 결과	• 두 가지 활성 의약 성분을 혼합한 결과, 각각의 성분을 개별적으로 복용할 때 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이 제공되므로,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, 이에 따라 피부용 연고의 원산지는 인도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